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0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업무가 인권담당관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여성권익담당관)로 이관됨에 따라, 사건 심의기능을 수행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9까지 신설)

나. 비밀유지 의무를 심의위원회 의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안 제21조의10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9. 29.~10. 5.'21. 4. 29. ~ 5. 20.)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2)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

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제21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친족이었던 자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② 사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의10제4항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7(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8(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9(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2조의2) 제4항 중 “조사과정”을 “조사나 제21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으로, “처리”를 “처리, 심의”로, “조사 과정”을 “조사나 심의 과정”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
년으로 한다.

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

3. (생략)

<신설>

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1조의2(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

<신 설>

<신 설>

지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제21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1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친족이었던 자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② 사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6(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의10제4항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7(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8(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의2(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 ③ (생략)
④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9(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10(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조사나 제21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과정----- 처리, 심의-----

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⑥ (생략)

제33조(시민참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1조(기금의 관리·이용)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2. (생략)

3.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 ⑧ (생략)

제50조(격차개선위원회 구성) ①·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노동 등

----- 조사나 심의
과정-----

-----.

⑤,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시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에
게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기금의 관리·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 사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격차개선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 경비 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행정6급 정은진(02-2133-5324)